

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앞서,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8일

경기도지사

1. 관련 법령

- 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나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, 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 등),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다.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7호)

2. 공고 목적

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시공사(도급자)가 건설현장 정기안전 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안전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·관리

3. 안전점검 수행 대상

도 발주 건설공사로서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

<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>

- 가. 시트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- 나.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
- 다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- 라.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마. 천공기(높이 10m 이상)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
- 바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[가설구조물^{1\)}](#)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사.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

¹⁾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,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,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,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,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·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
4. 참가 자격 : 가·나 항목 모두 충족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,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(법인등기부상 경기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)
- 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(토목, 종합, 건축)

5. 제출자료

- 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 (양식1)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(양식2)
- 다.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.
- 라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각 1부

6.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	'21. 6. 8.(화) 11:00	○ 경기도 홈페이지 (http://www.gg.go.kr) - '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'
신청서 등 제출서류	'21. 6. 8.(화) 11:00 ~ '21. 6. 28.(월) 15:00 (모집공고 기간 : 21일)	○ 우편 및 이메일 제출(공문첨부 필수) -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(신곡동)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(우11780) - 이메일 : persky89@korea.kr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	'21. 7. 1.(목) 17:00 예정	○ 경기도 홈페이지 (http://www.gg.go.kr) - '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'

7. 기타 사항

가. 신청서류 제출은 '21. 6. 28.(월)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.

※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유무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(주무관 정정식, ☎ 031-8030-4214)
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,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.
(관리기간 : '21. 7. 1. ~ '22. 6. 30.)

라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는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며, 금회 공고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지정공고 시 신청자격을 갖습니다.

마. 기타문의는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 주무관 이돈균·정정식(☎ 031-8030-4212, 4214)로 하시기 바랍니다.